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균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88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 박균택·박상혁·권칠승

박해철 • 주철현 • 김주영

한준호 • 전현희 • 박지원

박지혜ㆍ허 영ㆍ박 정

박홍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징계위원회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(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 명 이상)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, 대장급 군인의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 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위행위를 행한 군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및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 징계 및 조사・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

니하게 함으로써 불이익 회피수단으로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58조의 2제3항 신설).
- 나.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위원 수에 미달되는 사유로 항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60조의2제3항 신 설).
- 다. 합동참모의장, 참모총장, 중요 부서의 장, 병과장이 징계 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될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18조제4항, 제19조제4항, 제20조제3항 단서,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).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
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
제1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
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
제21조제3항 본문 중 "아니하면 전역된다"를 "아니하면 전역되고,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"로하고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・수사의

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
제58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3. 예비역 장성 등 그 밖에 국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

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3. 예비역 장성 등 그 밖에 국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의2(장성급 장교의 보직	제16조의2(장성급 장교의 보직		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	2		
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			
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			
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			
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. <u>&lt;단</u>	<u>다만, 제</u>		
<u>서 신설&gt;</u>	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		
	따라 징계 및 조사・수사의 사		
	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역		
	되지 아니한다.		
③ • ④ (생 략)	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		
제18조(합동참모의장 임명) ① ~	제18조(합동참모의장 임명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합참의장에 대하여는 임기	4		
동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			
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			
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			
거나 그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			
현역에서 전역된다. <단서 신	<u>다만,</u>		
<u>설&gt;</u>	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		
	<u>에 따라 징계 및 조사·수사의</u>		
	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전		

역되지 아니한다.

- 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(轉職)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, 해명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. <단서 신설>

- 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 전역된다. <단서 신설>

 제19조(참모총장 등의 임명)	1
~ ③ (현행과 같음)	
4	
<u>다만</u> , 제17조의2 <sup>x</sup>	<u> 11항</u>
제2호 및 제3호에 따라	<u> 징계</u>
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	보직
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	아니
<u>한다.</u>	
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	임명
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	)
③	
<u>다만, 제17조의2</u> 제	∥1항
제2호 및 제3호에 따라	<u> 징계</u>

④ (생 략)

- 제21조(병과장 임명) ① · ② (생 략)
  -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(제2 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 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 다)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 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. 다만,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 다.

④ · ⑤ (생 략)
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① · ②
(생 략)
<<u><신 설></u>

<u>및 조사·수사의 사유로 보직</u>
해임된 경우는 전역되지 아니
한다.
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병과장 임명) ① · ②
(현행과 같음)
③
<u>o</u> }
니하면 전역되고, 유사 직위에
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
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. 다
3호에 따라 징계 및 조사・수
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
 는 전역되지 아니한다.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① • ②
(현행과 같음)
③ 국방부장관은 징계처분등의
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
의 수가 3명에 미달하여 제1항

<신 설>

제60조의2(항고심사위원회) ① · 제60조의2(항고심사위원회) ① · ② (생략)

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등 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 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 로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 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징계위 원회의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 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다.
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로 1 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 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3. 예비역 장성 등 그 밖에 국 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(현행과 같음)

#### <신 설>

③ 국방부장관은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5명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 간위원으로 위촉하여 항고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장교인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, 위원 중 에 장교가 없는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법관·검사 또는 변호사로 1 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
- 3. 예비역 장성 등 그 밖에 국방 및 군인사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(생 략) <신 설>